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시 중소기업금융지원 의무화〉

■ 신장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06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장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07. 07.
3. 회 부 일 : 2026. 07. 0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정책목적과 공공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63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금자산 운용원칙에 국가정책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고려 명시

현 행	개 정 안
○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제63조) -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 <신 설>	○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제63조) -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 ④ 기금관리주체는 <u>국가정책의 수행</u> <u>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u> <u>요성</u>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하 여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63조는¹⁾ 기금자산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²⁾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제74조, 제76조 및 제79조)²⁾.

1)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2)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개정안은 현행 기금자산 운용원칙에 더하여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운용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업 수에서 99.9%를, 종사자 수에서 80.4%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고용에서도 핵심적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⑤ (생략)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⑤ (생략)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략)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은 국가의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정부는 2026년 총 4조 4,31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구분	지원목적	규모
혁신창업 사업화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17,558억원
신시장진출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5,794억원
신성장기반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12,851억원
재도약지원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 사업전환 및 통상변화대응 기업 지원	6,625억원
긴급경영 안정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5,000억원
밸류체인 안정화	• 단기 생산자금 공급 •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1,985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3)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 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한 국가 정책과제인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의 확대와 자금 공급의 적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설치하는 것으로, 현행 「국가재정법」은 각 기금별로 자산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심·의결)를 거쳐 수립되는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책 수행이나 특정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과 같은 정책적 고려사항을 기금 자산운용의 일반원칙에 추가할 경우, 각 기금별 목적과 특성을 반영하여 자산을 운용하도록 한 현행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807)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동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국가정책 수행 및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은 현행 「국가재정법」 제63조제1항의 공공성 원칙에 포함된 개념으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고, 필요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이나 ‘기금운용평가지

침' 개정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며,⁴⁾ 특정 영역(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여유자금의 투자를 법률상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는 경우 자율적·독립적 자산운용을 보장하는 법체계와 배치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기획예산처는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에서 기금 여유자금 운용 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 ③ (생략) <u><신설></u>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정책의 수행</u> <u>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u> <u>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하</u> <u>여야 한다.</u>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⁵⁾

문 의 처
02)6788-5151

5)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 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 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